

# 07 나의 임금,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예시

## 예시 시간급인 경우 HOUR

- 1시간에 8,500원의 시간급을 받는 경우



(설명)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예시 일급인 경우 DAY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8,000원을 받는 경우



(설명) 68,000원 ÷ 8시간 = 8,500원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예시 주급인 경우 WEEK

-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04,000원을 받는 경우



(설명) 204,000원 ÷ 24시간(1주 20시간 + 유급휴휴 4시간) = 8,500원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예시 월급인 경우 MONTH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776,500원을 받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휴 8시간) ×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 (상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921,000원을 받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휴휴 8시간) × 365 ÷ 7) ÷ 12월 = 약 226시간

## 플러스 정보 주휴수당 알아보기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 2231-0009	서울남부지청	02) 2639-2100
서울강남지청	02) 584-0009	서울북부지청	02) 950-9880
서울동부지청	02) 403-0009	서울관악지청	02) 3281-0009
서울서부지청	02) 713-000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 460-4545	안산지청	031) 412-1992
인천북부지청	032) 540-7910	평택지청	031) 646-1114
부천시청	032) 714-8700	강원지청	033) 269-3551
의정부지청	031) 877-0009	강릉지청	033) 650-2500
고양지청	031) 931-2800	원주지청	033) 769-0800
경기지청	031) 259-0204	태백지청	033) 552-0009
성남지청	031) 788-1505	영월출장소	033) 374-0009
안양지청	031) 463-7300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 853-0009	울산지청	052) 272-0009
부산동부지청	051) 559-6688	양산지청	055) 387-0009
부산북부지청	051) 309-1500	진주지청	055) 752-0009
창원지청	055) 239-6500	통영지청	055) 650-195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 667-6200	구미지청	054) 450-3500
대구서부지청	053) 605-9000	영주지청	054) 639-1111
포항지청	054) 271-6700	안동지청	054) 851-8000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2) 975-6200 (064-728-6100)	군산지청	063) 452-0009
전주지청	063) 240-3400	목포지청	061) 280-0100
익산지청	063) 839-0008	여수지청	061) 650-010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 480-6290	충주지청	043) 840-4000
청주지청	043) 299-1114	보령지청	041) 931-6640
천안지청	041) 560-2800	서산출장소	041) 661-5630

##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급  
8,590원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0%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지급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산입)
-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휴주 8시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일 경우 : 1,795,310원)

## 0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04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05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Month**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 0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0년 4월 급여 1,980,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	50,000원	식대·교통비	10,230원**
시간외수당	105,000원		
상여금	125,000원		
<b>계</b>	<b>1,980,000원</b>	<b>계</b>	<b>1,660,230원</b>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상여금 125,000원 중 2020년 월환산액 1,795,310원의 20% 초과금액

\*\* 식대·교통비 100,000원 중 2020년 월환산액 1,795,310원의 5%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660,230원 ÷ 약209시간 ≈ 7,943원 < 8,590원

∴ 최저임금 위반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